충청북도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충청북도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地方稅法施行令第79條에서 非營利事業者로 規定한 國家有功者등 團體設立에관한法律에 의하여 설립된 團體의 目的事業 推進을 支援하기 위하여 地方稅法 第 7 條 第 1 項의 規定에 의하여 道稅의 課稅免除에 관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 2 조(면제대상) 第 1 條의 規定에 의한 團體가 임대, 기타 受益事業에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不動產에 대하여는 取得稅·登錄稅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제 3 조(사무처리의 위임) 第 2 條의 規定에 의한 과세면제에 관한 事務는 당해 과세객체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市長(郡守·區廳長을 包含한다. 이하같다)에게 委任하여 處理한다.

제 4 조(면세신청) ①이 조례의 規定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證明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管轄 市長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②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을 받은 市長은 지체없이 이를 調査, 決定하고 그 內容을 申請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市長이 課稅免除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申請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 할 수 있다.

제 5 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附　　則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除外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참 고〉

地方稅法(部分拔萃)

제 7 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地方自治團體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不適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地方自治團體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不均一課稅를 할 수 있다.

第 8 조(수익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 地方自治團體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 특히 利益이 있다고 認定되는 事件에 대하여서는 불균일과세를 하거나 또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과세할 수 있다.

제 9 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內務部長官의 許可를 얻어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써 정하여야 한다.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規定에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取得稅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使用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일부를 그 事業에 직접 使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取得稅를 賦課한다.

1.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公益事業을 목적으로 하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非營利事業者가 그 事業에 直接 使用하기 위한 不動產의 取得

地方稅法 施行令(部分拔萃)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법제107조제1호에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非營利事業者"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

26.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의거상이자회, 4.19의거희생자유족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및대한무공수훈자회

國家有功者等團體設立에관한法律(部分拔萃)

제 1 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의거상이자회, 4.19의거희생자유족회 및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를 설립함으로써 호국전몰장병의 유지를 이어 조국통일을 앞당겨 이룩할 수 있는 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